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24.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6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12.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 1. 제안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시 동일세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토록 하고 세대 분가시 추정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 유사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감면하며
-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감면실적이 없고,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규정을 별도 주문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근거법령 조문 개정(안 제2조)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안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실비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안 제7조)
-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조정(안 제9조의2)
  - 감면율 75% 삭제(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50%감면만 해당)
- 고령화사회를 반영하여 1가구 1주택 예외대상 범위 조정(안 제12조)
  - 부양중인 고령 직계존속의 나이 상향조정(60세 이상→65세 이상)
- 실효성이 미미하고 감면실적이 없거나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 폐지(안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3조, 제21조)
  - 한국노동교육원 등 교육시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시 감면, 하수급업자의 대물변제 취득감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주택,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 독립가옥집단화 사업 등으로 인한 취득부동산 감면
- 감면후 추진조건 일부 보완(안 제17조, 제27조, 제28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3년이상 사용 조건 → 2년이상 사용 등
-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시에 대한 감면제도 보완(안 제30조의4)
  - 동일세대거주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부모-자녀간 확인 등
- 사치성 재산을 감면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신설, 안 제31조의2)
  - 각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규정을 별도의 1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가. 도세감면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정부의 세제정책 변화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9조<sup>3)</sup>에 근거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 도세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 통보(2009. 9월 말)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수정안을 시도 통보(2009. 10월 중순)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감면대상을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나. 개정조례안 개정내용 검토결과

##### □ 과세형평을 위해 감면조정(제7조, 제8조)

##### ○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노인복지시설 설치 → 설치하고 직접 운영자로 한정
- 현행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 무료노인복지시설으로 한정

##### ○ 평생교육시설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은 감면

##### □ 지방세법 등에서 중복감면하거나,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목적이 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

(제9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1조)

3)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자동차매매업,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의 매매용은 제외
  - ※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중고항공기는 감면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배달하기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하수급업자와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 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할 경우 제외
- 임대주택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추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
  -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감면
- 농어촌주택사업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지회 사업
  - 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축 건설사업
  - 분산농지집단지회사업
  -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 소도읍개발사업은 제외
- 광산지역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등 공동화장실은 제외
- 농협중앙회 등과 관련한 감면은
  - 현행 감면대상인 구관사업용 재산에 대한 75%를 삭제
  - ※ 지방세법에 따라 50% 감면

□ **고령화 사회 특성을 반영한 감면 (제12조, 제30조의4)**

○ 1가구 1주택 판단시

- 현행 감면대상인 부양 직계존속의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감면액 추징 배제

- 현행 감면추징대상인 1년이내 세대분가시 감면액을 추징하는 것을 동일세대 거주여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확인될 시 감면

□ **감면후 추징조건 일부 보완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가공업자 5년이내에서 2년이상으로 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시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조정
- 현행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3년이내에서 1년내로 조정

□ **사치성 부동산 감면조항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제5조의2, 제19조, 제22조, s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의2)

-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및 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 **관계법령과 관련 용어 정비**

-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변경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대한 근거법령과 자구수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활용사촌으로 변경

##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도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위 법령과 중복 게재된 감면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으로 하고, “자활용사촌안”을 각각 “자활용사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률에 따른”으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를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의2(종전의 제5조의1) 중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60세” 를 “65세” 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 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 라 한다)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 을 “임대주택용”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 을 “임대주택용” 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 을 각각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로 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제외한다)” 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전동차”로,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3년 이상”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를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중 “가정”을 “가족”으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으로 하며, “직접 양육하는 자”를 “양육하는 자”로 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